

축산업의 허가·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(제15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[제2호가목9)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]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제2호가목9)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재사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2호	허가 취소		
3)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3호	영업의 전부정 지 1개 월 허가 취소	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	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
4)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·장비 등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사·장비 등을 갖추지	법 제25조제1항제4호			

않은 경우				
5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·교육·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5호	허가 취소		
6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0조제1항(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살처분(殺處分)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6호	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	허가 취소	
7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7호	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	허가 취소	
8) 「약사법」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8호	허가 취소		
9)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·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9호	영업의 전부정 지 1개 월	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	허가 취소
10)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10호	영업의 전부정 지 1개 월	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	허가 취소

나.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	법 제25조제2항제1호	등록 취소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	법 제25조제2항제2호	등록 취소		
3)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25조제2항제3호	경고	영업의 일부정 지 15 일	영업의 일부 정지 1개월
4)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2항제4호	등록 취소		
5)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설·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·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제2항제5호	등록 취소		